

경운대학교 학생회선거관리위원회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운대학교 총학생회 정.부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거) 경운대학교 총학생회 정.부회장의 선거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로 한다.

제3조(선거권) ① 경운대학교 재학생으로서 해당학기 등록을 필한 자로 한다.(단, 계약학과생, 외국인유학생은 제외한다)

② 휴학 또는 징계상태에 있는 자는 그 기간 중 선거권을 상실한다.

제4조(피선거권) 선거권을 가진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는 학생임원 선거의 피선거권을 가진다.

1. 품행이 방정하고 지휘, 통솔 능력이 있는 자
2. 본 대학에서 6학기 이상의 등록을 필하고 75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3. 3학년에 재학 중인 자로써 15학점 이상을 수강중인 자
4. 직전 학기 성적 중 'F'가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평균평점 3.0과 신청실점평균 80.0점 이상이며, 출성상황이 양호한 자
(단, 낙제과목(F)이 있을 경우 3과목에 이내로 제한하며 3과목 전체를 재수강 또는 계절학기로 이수하여야만 그 자격이 인정된다)
5. 징계처분을 받은 자 또는 징계 회부되어 있는 자는 피선거권이 상실된다.

제5조(선출시기) 매 학년도 11월중에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11월중에 실시가 불가능 할 때는 그 사유가 해제되는 최단 시일 내에 실시한다.

제6조(선거비용) 선거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학생회비에서 지출한다.

제7조(임기 및 보궐선거) ① 정.부회장의 임기는 3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로 한다.

② 회장이나 부회장이 궐위되었을 때는 1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후임자는 임기의 잔임 기간 동안에만 재임한다. 단, 잔임 기간이 180일 이상일 때는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그 이하일 때는 부회장 및 부서장중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선임하며 총장의 승인을 얻어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③ 보궐선거는 대의원회 중 선발하며 대의원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최다득점자를 선출하여 학생지도위원회의 인준을 받아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장 학생회선거관리위원회

제8조(목적) 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학생회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라 한다)를 둔다.

제9조(구성) ① 선관위의 구성은 현임 정.부회장을 비롯한 학생회 임원으로 구성하고 학생회장이 위원장이 되며 학생지도위원회의 지도를 받는다.

② 선관위 구성이 8인 이하일 때는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선관위의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구성시기) 선거일 20일전까지 구성한다.

제11조(업무 및 권한) 선관위의 업무 및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일시 결정공고 및 선거인 명부 작성
2. 입후보자 등록 및 자격심의에 관한 사무일체
3.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일체
4. 선거 및 입후보자에 관한 공시사무 일체
5. 당선자의 선포 및 공고
6. 기타 선거에 관한 사무일체

제12조(금지사항) 선관위의 위원은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선거운동원이 될 수 없으며, 위반 시에는 자격을 박탈한다.

제13조(해체) 선관위는 선거일 3일 이후에 자동 해체된다.

제3장 선거에 관한 사무일체

제14조(입후보자 등록) ① 정.부회장으로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입후보 등록 원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선거일이 공고된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후보자등록은 정.부회장 별도로 서류를 준비하여 함께 등록한다.

1. 입후보등록원서 1부
 2. 서약서(보호자) 1부
 3. 학과장 또는 지도교수 추천서 1부
 4. 재학증명서 1부
 5. 성적증명서 1부(증명서 발급자 날인 증명서)
 6. 투·개표 참관인의 명단과 재학증명서 각 1부(투표참관인 2명, 개표참관인 2명)
 7. 선거권자 100인 이상의 추천서 1부(추천서에 중 정·부회장 모두 기재)
- ② 선관위는 입후보자등록 서류를 접수 받아 입후보자의 자격을 심사하여 등록 마감 후 공고한다.
- ③ 등록기간 내 입후보자 등록이 없을 때는 2일간 연장하며 그래도 없을 경우 학생지도위

원회에서 추천하여 선임한다.

④ 선관위는 입후보자가 등록 후 본 규정 및 학칙에 위반되는 행위를 했을 때 학생지도위원회 심의와 승인을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선거방법) ① 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직선제로 한다.

② 선거는 연립후보(러닝메이트)제로 한다.

제16조(선거운동) 선거운동에 대한 내용은 각 호와 같으며 선관위와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와 승인을 반드시 받도록 한다.

① 선거운동은 선관위가 정한 선거운동 기간만 할 수 있다.

② 선거운동은 소견발표, 벽보(선관위 제작), 현수막(선관위 제작)을 통하여 할 수 있으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승인을 12시간 전에 반드시 얻어야 한다.

1. 소견발표에 관한 사항은 당해 연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소견발표장소가 아닌 강의실이나 공공시설에서 소견발표는 할 수 없다).
2. 벽보 및 현수막은 선관위가 지정한 장소에만 붙이고 그 외의 선거운동행위는 일체 하지 못한다.
3. 투표일 오전 10시까지 교내에 붙어있는 벽보와 현수막 등 모든 선거유인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관위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때는 경고를 줄 수 있다.

제17조(선거연기)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선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관위에서 선거를 연기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제18조(소견발표) 선관위는 입후보자의 합동소견 발표회를 다음과 같이 갖도록 한다.

1. 입후보자의 소견발표는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2. 소견발표 순위는 추첨으로 정한다.
3. 소견발표 내용 및 각종 유인물은 발표 24시간 전에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학생지도위원회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
4. 기타 소견발표 일시, 장소, 회수는 선관위에서 결정한다.(단, 강의실이나 공공시설물 등의 장소에서는 소견발표를 할 수 없다)

제19조(선거일) 선거일은 선관위 위원장이 투표일 10일 이전에 이를 공고한다.

제20조(투표 및 개표) ① 투표용지는 선관위에서 작성하고 입후보자의 성명이 있는 곳에 기표한다.

② 선거권자는 학생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해당된다. 본인임을 증명 할 수 있는 증명서를 선관위에 제시하고 선거인 명부와 대조 날인 후 기표 용지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서 기표하여 투표함에 넣는다. 신분증이 없는 학생은 학생지도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투표할 수 있다.

- ③ 투표소 내에는 투표자, 학생지도위원, 선관위원, 각 후보자 투표참관인 2인 이외에는 출입을 금한다.
- ④ 투표시간은 오전 10시부터 18시 30분까지로 한다.(단,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 ⑤ 개표는 투표완료 즉시 학생지도위원회와 선관위가 정한 장소에서 학생처장, 학생지도담당직원, 선관위원, 각 후보자 개표참관인 2인만 입회하여 개표를 한다.
- ⑥ <삭제>

제21조(투표의 효력)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는 무효로 한다.

- 1. 규정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 2. 두개 이상의 기표란에 기표한 자
 - 3. 지정한 도구가 아닌 것으로 기표한 것
 - 4. 규정 이외의 부호나 표시를 한 것
 - 5. 어느 기표란에도 기표하지 아니한 것
 - 6. 기표란이 아닌 곳에 기표한 것
 - 7. 기표의 위치가 불분명 한 것
 - 8. 기표란의 일부 또는 전부가 훼손된 것
 - 9. 기타 선관위가 무효로 판정한 것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가급적 참관인과 투표자의 의견을 존중함을 원칙으로 유, 무효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 ③ 선관위에 의해서 무효여부 판정이 어려운 것은 학생지도위원회에서 판정한다.

제22조(당선) 당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선관위는 유효투표 중 최다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고, 총장의 인준을 받아 이를 공고한다.
- 2.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소자(회장후보) 순으로 정한다.
- 3. 입후보자가 단독일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
- 4. 당선자에 대한 찬반투표는 할 수 없다.

제23조(벌칙) 선관위는 선거 기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자에 대하여 피선거권을 박탈하거나 당선 무효를 결정할 수 있다.

- 1. 추천서를 부당하게 작성한 자(추천서의 서명은 필히 본인이 해야 하며 어떠한 형식이던 본인이 서명하지 아니한 추천이 있을시 추천서 전체를 무효로 한다.)
- 2. 선관위 위원, 입후보자 및 유권자에 대하여 폭언, 폭행, 협박 유언비어를 유포한 자
- 3. 학교나 교직원의 명예를 훼손한 자
- 4. 벽보, 현수막 및 유인물을 승인 없이 발행 유포하거나 게시한 자
- 5. 부정한 선거 운동을 한 자
- 6. 선관위에서 개최하지 않은 장소에서 선거를 위한 집회 및 시위행위를 한 자

- 7.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거나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자나 선관위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자
- 8. 학생상벌규정에 의거 근신 이상의 징계에 해당하는 자
- 9. 정당,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 및 이와 유사한 불법사회단체에 가입, 활동을 한자 또는 활동을 하고 있는 자
- 10. 사전선거운동을 실시한 자(사전선거운동기간은 선거공고일로부터 선관위가 정한 선거운동 전일 24시까지로 한다.)

제24조(경고) 경고는 3차까지로 하며 경고에 해당되는 내용을 증빙하여 학생지도위원회에 제출한다. 경고누적이 된 경우 학생지도위원회의 심의와 승인을 거쳐 피선거권을 박탈하거나 당선 무효를 결정 할 수 있으며 모든 경고사항에 대해 선관위는 학생들에게 즉시 공개한다.

제25조(기타) 선관위는 본 선거 규정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대하여 사전에 지침을 결정하고 해당 입후자에게 반드시 설명하여야 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